

제 243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19.11.12.)

규칙안 검토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조 현 정]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[검 토 보 고 서]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. 10. 21.

나. 발 의 자 : 박수자, 이홍희, 김향란, 신재화, 이재운, 최정환,
표주숙, 김종두, 심재수, 권재경, 김태경

다. 회부일자 : 2019. 10. 21.

2. 개정이유

-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
- 상위법에 명시된 의원 서류제출요구의 근거조항 신설

3. 주요내용

가.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(안 제56조의2, 제74조, 제79조, 제80조)

- 1)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- 2) 깍연 ⇒ 흡연
- 3) 자 ⇒ 사람
- 4) 기타 ⇒ 그 밖의, 그 밖에

- 5) 주기가 있는 자 ⇒ 술에 취한 사람
- 6) 차별규정 삭제 :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입장제한

나. 서류제출요구 조항 신설(안 제67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자료 : 「국어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기타 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19. 10. 18. ~ 23.
 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비대상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서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고
- 상위법에 명시된 의원 서류제출요구의 근거조항을 신설·운영하기 위한 것으로
-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